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의7호서식] <신설 2018. 7. 17.>

월평균 소득현황

※ 어두운 란(　　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즉시
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
	주소		전화번호 (유선) (휴대전화)
			전자우편
특별공급유형	청년 [ ]	신혼부부 [ ]	고령자 [ ]
월평균 소득	가구총계		원
	세대주 성명	(연간소득 원 / 재직기간 개월)	원
	세대원 성명	(연간소득 원 / 재직기간 개월)	원
	세대원 성명	(연간소득 원 / 재직기간 개월)	원
	세대원 성명	(연간소득 원 / 재직기간 개월)	원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제14조의5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세대주와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현황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신길역 준타워(청년주택)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	수수료 없 음

유의사항

1. 신청인은 서명하거나 거래인감으로 날인하십시오
2.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,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3. 세대주와 세대원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